

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앙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 주거관련상담·정보제공·사례관리 등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나. 위탁기간 만료('19.12.31)에 따라 주거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- 다.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 중 10개소는 최초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주거복지센터 운영

나. 위탁현황(동의대상)

연번	센터명	수탁기관명	(재)위탁일
1	성동주거복지센터	서울주택도시공사	'18.01.01.
2	성북주거복지센터	(사)나눔과미래	'18.01.01.
3	강북주거복지센터	(사)강북주거복지센터	'18.01.01.
4	노원주거복지센터	(재)대한성공회유지재단	'18.01.01.
5	은평주거복지센터	(사)마을과사람	'18.01.01.
6	서대문주거복지센터	(사)희망마을	'18.01.01.
7	금천주거복지센터	(사)한국주거복지협회	'18.01.01.
8	영등포주거복지센터	(사)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	'18.01.01.
9	관악주거복지센터	(사)관악주민연대	'18.01.01.
10	송파주거복지센터	(사)위례	'18.01.01.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재계약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주거기본법 제22조(주거복지센터)
-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(센터의 설치), 제21조(관리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재계약)
-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('19.8.30)

○ 재계약 필요성

- '18년 25개 자치구로 확대된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 추진역량을 갖췄으며,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-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경험,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의 강점 유지 필요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)

연번	센터명	소재지	규모
1	성동주거복지센터	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, 다남매타워 1204호	77㎡
2	성북주거복지센터	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,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705호	168.96㎡
3	강북주거복지센터	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35길 34	54.44㎡
4	노원주거복지센터	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17, 원터행복발전소 3층	17㎡
5	은평주거복지센터	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,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506B	21㎡
6	서대문주거복지센터	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77, 201호	49㎡
7	금천주거복지센터	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터) B동 1311-2호	55㎡
8	영등포주거복지센터	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, 이룸센터 602호	224.79㎡
9	관악주거복지센터	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, 2층	35㎡
10	송파주거복지센터	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, 2층	73.5㎡

마. 위탁사무 내용 : 「서울시 주거기본조례」 제20조 및 협약서에 따른 사무

- 주거 관련 조사지원
- 주거복지사업의 정보제공,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
-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
-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
-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
-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-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
-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
-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바. 위탁기간 : '20.1.1 ~ '21.12.31.(2년)

사. 위탁방식 : 사무위탁 재계약

아. 위탁비용 : 1,448백만원('20년도 예산안)

• 산출내역 144,809천원 × 10개소 = 1,448,090천원

센터당 인건비 = 112,809천원 (3명)/ 운영비 = 5,000천원/ 사업비 = 27,000천원

자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차.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: 적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주거기본법 제22조

제22조(주거복지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·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

제19조(주거복지센터의 설치)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(이하 "중앙센터"라 한다.)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.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1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·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'20년부터 회계 변경

-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→ 주택사업특별회계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이은서 (☎ 2133-7024)